특허청 공고 제2022-82호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원 한도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가치평가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75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지식재산평가별(가치평가형, 등급형) 내용은 별지서식 제1호 참조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4쪽 참고*)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기업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필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연도 IP보증, IP 담보 평가비용을 이미 수혜받은 기업도 IP투자연계 평가비용 지원 가능** (☞*공고문 17쪽 참고*)

4. 사업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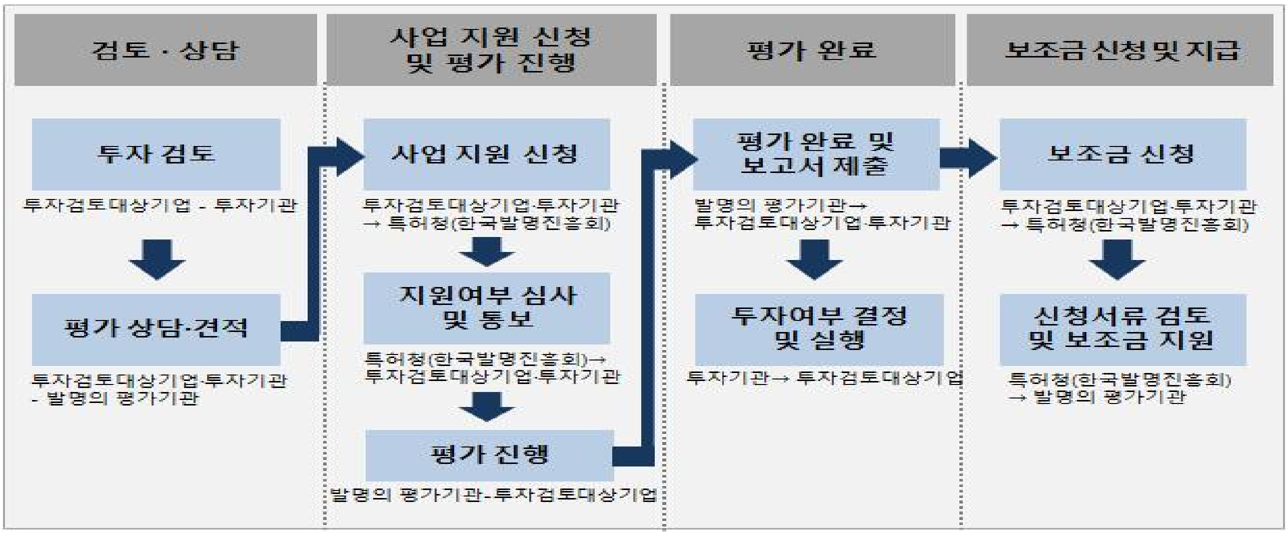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ipv_too@kipa.org 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No	구 분	제 출 서 류 명	수 량	비 고
1	사업 신청시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2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최근 2개월 이내**
4		기업신용·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5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2호
6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2-3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1부	별지서식 제2-4호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중견기업 필수제출)	각 1부	**최근 2개월 이내**
7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8		평가보고서 사본	1부	직인날인된 최종본
9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10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1호
1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12		평가계약서 사본	1부	-

*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내 첨부 서식 활용

ㅇ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생년이 1983년 이후 2005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벤처기업	■ **벤처확인서 사본**(발급기관: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확인서 사본**(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1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기업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국가보훈처)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우수IP 보유 BIG3 기업	■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명·세부과제명 등 내용상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소관기관 직인 포함)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 우대 지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해당하는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문의처

구분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지식재산 평가문의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윕스	02-3153-7928	
	㈜이크레더블	02-2101-9208	
	㈜케이티지	070-7805-1618	
	특허법인 다나	02-6957-31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38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5	
	기술보증기금	02-2155-3753	
	신용보증기금	02-2014-01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2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한국산업은행	02-787-616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54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권리성, 기술성을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7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42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자에 대한 **투자기관·발명의 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은 진행하지 않음**

[별　　첨]

1. 지식재산가치평가 유형별 예시 각 1부.
2.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3.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별지서식 제1호]

【지식재산가치평가 내용(예시)】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은 투자기관이 대상기업의 특허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기술평가 수행 및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예시1) 가치평가형 평가**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의 평가모형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 가능

[지식재산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① 기술개요
	② 기술환경분석
	③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
권리성	① 권리 안정성
	② 권리범위분석
	③ 사업 연관성
시장성	① 시장개요
	② 시장환경분석
	③ 시장경쟁분석
사업성	① 사업화 기반 역량
	② 제품 경쟁력
	③ 매출 추정 및 수익분석
가치평가	지식재산의 활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가치(NPV)를 결정하고,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기여율을 결정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

* **(예시2) 등급형 평가** 투자기관 맞춤형 특허 평가(권리성/기술성 중심)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등급화 하여 평가 가능

[지식재산 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항목	평가내용
특허 권리성	① 제품적용여부
	② 구성의 필수성
	③ 선행기술존재여부
	④ 실시예의 다양성
	⑤ 특허의 활용 가능기간
	⑥ 경쟁사의 응용기술 선점여부
	⑦ 발명의 효과와 독립항의 효과의 동일성
	⑧ 해외권리 확보여부
특허 기술성	① 혁신성
	② 상용화 가능성
	③ 호환성
등급평가	각각의 항목에 등급을 책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식재산의 최종 등급산정

[별지서식 제2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투자검토 대상기업	**주　　소**	(우)_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투자검토 대상기업 담당자	**성명/직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권리(등록)번호		특허 제 10-　　　　　　　호 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투자기관	**주　　소**	(우)_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투자기관 담당자	**성명/직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평가용도		투자용	**비용 지원율**	**80%**
평가비용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주
평가기관	**지점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기부담금 납부주체		□ 투자검토대상기업　　□ 투자기관　　□ 기타 (　　　)		

《 첨부서류 》

1. 특허등록원부 1부 (※열람용 제출불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기업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4.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2호)*

5.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2-3호)*

6.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1부
(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2-4호)*

《 주의사항 》

- 평가 중인 기술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평가대상기업 :　　　　　　　　　　　　투자기관 :

(인)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2-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담 당 자 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 **기업신용정보** : 보증·IP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조회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IP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조회할 항목	•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2-2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및 투자기관과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평가용도	※ 평가용도(목적)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항목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가치평가 등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 예정 내용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 추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의 필요성 (투자기관)	※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 예정금액	※ 투자예정금액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별지서식 제2-3호]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작성)

년　　월　　일　　　　　　　　*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만 인정

귀하 (신청기업/신청인)　　　　o 권리(등록)번호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o 발명의 명칭 :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일금　　　원정(₩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항 목	세 항 목	평가비용	
		현금	현물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계	원	
②경비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비		
	출장비		
	유인물비		
	기술정보수집비 (유료DB 사용료 등)		
	시험평가/분석비 (평가항목 등)		
	재료비 (시약, 재료 등)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소 계	원	원
③일반관리비=(①+②)x5% 이내		원	원
④이윤=(①+②+③)x10% 이내		원	원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원	원

[참고사항]
① 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경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함
③ 일반관리비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외주가공비 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서식 제2-4호]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권리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2-1호 기업신용·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별지서식 제3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대상기업	주 소	(우)_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투자기관	주 소	(우)_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담당자명/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권리(등록)번호		특허 제 10- 호 외 건		
평가용도		투자연계		
투자현황 (해당 여부에 표시 및 기입)		투자실행(예정)	투자미실행	
		투자기관: 투자금액:	☐	
평가항목		☐ 권리성 분석 ☐ 기술성 분석 ☐ 가치산정	☐ 시장성 분석 ☐ 사업성 분석 ☐ 기타( )	
평가비용		원 (VAT별도)	보조금 지원액	원
평가기관	지점명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직인날인 필수)
2. 계약금 또는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 1부 *(별지서식 3-1호)*
4. 보조금입금통장 사본 1부
5. 평가계약서 사본 1부.

《 주의사항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서식 제3-1호]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 동의서

□ 평가비용 지원대상 현황

발명(고안)의 명칭	
권리등록번호	(특허) 등록 제________________호 외_____건
평가신청자	
평가비용	일금__________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별도)
평가기관명	

□ 평가비용지원 현황

평가비용 보조금 지원액 (비율)	________________원 (평가비용의 %)

□ 양도 동의사항

상기 건과 관련하여 평가신청인이 지원받을 평가비용 보조금의 수령권한을 아래와 같이 양수인(평가기관)에게 양도함

20 년 월 일

<table>
<tr><th>양 도 인</th><th>양 수 인</th></tr>
<tr><td colspan="2">※ 양도내용 : 평가비용 보조금 ________________원 수령에 관한 권한</td></tr>
<tr><td>(신청자)

(인)</td><td>(평가기관)

(인)</td></tr>
</table>

[별지서식 제4호]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

업체명	
대표자명	
발명의 명칭	
권리(등록)번호	특허 제 10- 호 외 건

구분	기존 수혜 사업	추가 지원 희망 사업	기존 평가기관명	항목(√체크)
1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
2	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
3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
4	IP투자연계	IP보증연계		□

추가지원 필요 사유	

위와 같이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기업 : (기업명)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공문으로 송부 시 직인생략 가능